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7
------------	------

발의연월일 : 2016. 8. 31.

발 의 자 : 박덕흠 · 최교일 · 김종석

이완영 · 박대출 · 박명재

김명연 · 황영철 · 엄용수

이우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4.6.3. 제정('15.1.1. 시행)된 이후 2년여 정도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으나,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 다양화를 통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하게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현행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투자선도지구 용어의 정의 중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중’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함(안 제2조).
- 나.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8조).
- 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대행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안 제19조제6항 신설).
- 라. 지역개발계획 구상단계부터 사업경험이 많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지역특화사업 발굴, 장기적 발전전략 수립 등의 검토 업무 등을 지원하도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함(안 제19조의2 신설).
- 마. 국가 및 지자체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 바. 투자선도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일괄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제25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5조 제7항 신설).
- 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광진흥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5조제8항 신설).

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의제처리되는 14종의 특례에 대해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도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제4호 신설).

자.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9조).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투자선도지구”란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의 성장거점으로”를 ““투자선도지구”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변경하려면”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변경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개발계획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2. 지역개발계획의 승인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총괄사업관리자 지정등)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전략 수립 및 장기 지역발전계획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3. 지역개발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 검토

4.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5. 개별 개발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6. 용지조성 사업별 사업성 분석

7.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제2호부터”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로, “시·도지사에게 함께 제출”을 “지정권자에게 함께 제출(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

는”을 “지정권자는”으로, “제42조에”를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승인에 필요한 절차와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제1항에 따라 일괄하여 지정·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에 제7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받는 때에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개발 사업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또는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부터 제6호의3까지에 따른 물류단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승인·결정·지정·수립 등

제79조 중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 <u>투자선도지구</u> ”란 지역개발 <u>사업구역</u> 중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 <u>투자선도지구</u> ”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 ----- ----- -----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8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 ① 시·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u>변경</u>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u>변경</u>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 ① ----- ----- <u>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u> <u>하려면</u> ----- ----- <u>변경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u> 1. 지역개발계획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2. 지역개발계획의 승인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
<신 설>	
<신 설>	

<p>② ~ ⑤ (생 략) 제19조(시행자의 지정) ①~⑤ (생 략) <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우</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시행자의 지정) ①~⑤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u> <u>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지역개</u> <u>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u> <u>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u> <u>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u> <u>할 수 있다.</u></p> <p><u>제19조의2(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u> <u>에 따른 지정권자는 지역개발</u> <u>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u> <u>위하여 제19조제1항제2호 및</u> <u>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개</u> <u>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u> <u>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u> <u>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u> <u>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p><u>1. 지역특화전략 수립 및 장기</u> <u>지역발전계획 등의 검토와 관</u> <u>련된 업무</u></p> <p><u>2.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u></p>
---	---

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  
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3. 지역개발사업계획 및 실시계  
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 검토

4.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5. 개별 개발사업 간의 공정관  
리 및 조정방안

6. 용지조성 사업별 사업성 분  
석

7.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 · 승인) ① 제19조제  
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자는 신속한 지  
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  
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제25조(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 · 승인) ① 제19조제  
1항제1호부터 -----  
-----  
-----  
-----

의 지정, 제1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함께 제출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괄하여 지정·승인을 하려면 이 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지정·승인 관련 요건 또는 고려사항의 검토,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생 략)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① ~ ② (생 략)

-----  
-----  
----- 지정권자  
에게 함께 제출(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지정권자는 -----  
-----  
-----  
-----  
-----  
-----  
-----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 승인에 필요한 절차와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제1항에 따라 일괄하여 지정 · 승인 된 것으로 본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⑥ (생략)

<신설>

<신설>

③ -----  
-----  
-----  
-----  
-----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받는 때에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또는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  
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  
-----.